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91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서천호 · 임종득 · 김선교
김장겸 · 조인철 · 박덕흠
김기현 · 엄태영 · 김재섭
신동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된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구분됨.

그런데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됨.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단서 신설>	5. ----- ----- ----- ----- ----- ----- -----행위.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6. · 7. (생 략) ② ~ ⑤ (생 략)	<u>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 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u>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